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 — 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 — 5444

제 587 호

1977·1·28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138 호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3
◎ 규 칙
제 1666 호 서울특별시 직무대리규칙 …… 9
제 1667 호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 11
제 1668 호 서울특별시 소원 심의회 규칙중 개정규칙 … 11
◎ 고 시
제 1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 14
제 11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적승인 …… 14
제 12 호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및 지적승인 …… 15
제 13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신설,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 15
◎ 공 고
제 17 호 의료보호 제2차 진료기관 지정 …… 16
제 18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대체지정 공고 …… 1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1.28

◎서울특별시조례제 1138호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시행령제26조및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출연금, 대불상환금,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기관의 임명) ①시장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아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제1기 납기일로 하여 매분 기별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5만원 미만은 1년이내
2.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은 2년 이내
3. 15만원 이상은 3년 이내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매분기 납입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1월 경과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3회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상환의무자와 그 세대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의무자의 상환능력 유무를 조사 확인한후 생활능력이 없는자에 대하여는 그 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개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7.1.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 기금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별지제 1 호서식)

원 부 납입통지서

제 호 . . . .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 기 금	소관		
상 환 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출장소장 ㊞

제 호 . . .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 기 금	소관		
상 환 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출장소장 ㊞

영수필통지서

제 호 . .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소관		
상환금 내용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 하였압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

구, 출장소장 귀하

영 수 증

제 호 . .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소관		
상환금 내용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

분입수입원

268 × 190 (신문용지 50㎏)

(제2호서식)

(전 면)

우 편 엽 서

□□□-□□

귀

하

(후 면)

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호	년 도 분 기 분
대 불 상 환 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197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일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197 . . .

구 , 출 장 소 장 ㊞

규　　칙

서울특별시 직무대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 년 1월 28 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666 호

서울특별시직무대리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각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법정대리) ①기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출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구출장소 설치조례에 규정한 차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2.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장이나 담당관이 있는 사업소는 부장이나 담당관이, 과가 있는 사업소는 과를 설치하는 조례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가 없는 사업소는 계가 있을 때에는 계를 설치하는 규칙에 규정된 계의 순위에 의한 계장이, 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보조기관 또는 직원(이하 "직원"이라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제 1 부시장과 제 2 부시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리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제 2 조에 규정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2. 기획관리관, 비상계획관, 문화공보관, 감사관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된 담당관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2급 담당관이 있는 국의 경우에는 담당관이 대리한다.

4. 실,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계를 설치하는 규칙에 규정된 계의 순위에 의한 계장이 대리한다.

5.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계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당해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의하여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2. 기관의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의하여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다만, 계장이나 과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의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서울특별시장직무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발자서식)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위대리 직명
2. 대리자직, 성명
3. 대리기간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 년 1 월 28 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667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 4 조중 " 15 만원 " 을 " 20 만원 " 으로 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197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원심의회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 년 1 월 28 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668 호

서울특별시소원심의회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원 심의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 위원 5 인으로 " 를 " 위원 5 인이상 7 인이하로 " 하고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제 1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관,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과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중 시장이 위촉한자가 된다.

제4조 제2항중 "법무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국무총리 소원 심의회와의 관계등) ①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을 접수한때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변명서 및 필요문서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국무총리 또는 각부장관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는 소원 심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1. 서울특별시장에게 진달된 소원 사건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상신토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원 심의회를 규정 운영하고 있는바

2. 정부의 사회부조리 척결시책과 관련 행정처분이 증가됨에 따라 소원 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라 부당하게 침해된 시민의 권리, 이익을 구제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의 소원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3. 현행 재결 행정청의 내부인사 4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소원 심의회 위원을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등 외부인사를 보강하여 소원 심의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행정 심판제도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4. 국행삼 181.6-82 (1977.1.20) 호로 국무총리로부터 국무총리 소원 심의회와의 관계등을 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장처분에 대한 소원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관,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변호사 및 대학교수중 각각 시장이 위촉한자가 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관,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과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중 시장이 위촉한자가 된다.
제4조 ②간사는 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송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 ②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송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는 소원심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국무총리 소원심의회와의 관계등) ①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을 접수한때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변명서 및 필요문서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때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국무총리 또는 각부장관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소원 심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109 호 (76.7.19) 로 시설 변경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 2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77.1.26.

서 울 특 별 시 장

o 도로 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16	30	1,210	영등포동1가113	문래동광장	미고시구간 지적승인
변경	〃	1	38	35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1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1.26

서 울 특 별 시 장

o 시설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주차장	용산구 한강로2가 166-1	627	장원산업 주차장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2 호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및지적승인

1.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수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 3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77.1.26

서 울 특 별 시 장

가.도시계획 시설(수도)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상도 가압펌프장	관악구 상도동 122-53 호	133 평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3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일부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13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7.1.2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 시설(학교) 신설,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학교 (영동고등학교)	강남구 학동산 15의 1 외 6필지	62,149㎡ (18,800평)	
〃	학교 (대성중, 고등학교)	서대문구 갈현동산53의 1외 11필지	15,795㎡ (4,778평)	
〃	학교	영등포구 화곡동 1-1 외 2필지	33,178㎡ (10,036.3평)	
기정	학교 (동양공업전문학교)	영등포구 고척동 60-160 외 2필지	25,944㎡ (7,848평)	
변경	〃	영등포구 고척동 산58의 1외 19필지	10,702㎡ (3,237.4평)	추가

(별첨 도면 생략)

공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7호

외료보호제 2 차진료기관지정

생활보호법시행령 제 7 조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할 외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7년 1월.

서 울 특 별 시 장

구 자 춘

(다 음)

진료지구명	진료대상지역	2차진료	
		외료기관명칭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대부속병원	종로구 종로6가 72
	중구	중대부속성심병원	중구 필동2가 82-1
	동대문구	경희대부속병원	동대문구 회기동 1

진료지구명	진료대상지역	2 차 진 료	
		의 료 기 관 명 칭	소 재 지
	성 동 구	한 양 대 부 속 병 원	성동구 행당동산8 - 2
	성 북 구	카톨릭의대부속성가병원	성북구 하월곡동 88 - 526
	도 봉 구	교 대 부 속 병 원	종로구 명륜동2가4
	서대문구	연대부속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신촌동 15
	마 포 구	서 울 적 십 자 병 원	종로구 명동 163
	용 산 구	국 립 서 울 병 원	용산구 한강로 3 가 56
	영등포구	중대부속한강성심병원	영등포구 영등포동 94 - 200
	관 악 구	영원한도움의집모병원	관악구 흑석동 177 - 8
	강 남 구	순 천 향 병 원	용산구 한남동 757 - 58
	서울특별시전역	시 립 아 동 병 원	종로구 사직동 1
	〃	시 립 정 신 병 원	서대문구 옹암동 산 6
	〃	청 량 리 뇌 병 원	동대문구 청량리동 48

◎서울특별시공고제 18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및대체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요령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대체지정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77.1.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업체조서

지정번호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수 출 품 명	77 년 수 출 목 표 액
985	진도산업(주)	김 영 진	영등포가리봉동 371 - 36	모피원단	$1,200,000

2. 대체지정업체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업 체 명	㈜동양트랜스포마	동양트랜스공업주식회사	
대 표 자	김 정 후	마 용 입	
소 재 지	동대문 묵동 351-2	좌 동	
생산제품	소형트랜스	좌 동	
지정번호	308	좌 동	